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6. 18.(목) 총 4매(본문3)	
담당 부서 항공운항과	담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권시홍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 201-4259, 4273, 4293	
보 도 일 시	2020년 6월 1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1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여객기 화물운송, 운항요건 합리화하여 확대한다!

-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수송 활성화 위해 안전운항 기준 추가 시행
- 위험경감조치에 적합한 화물을 일반 상자·용기로 수송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여 6.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조치는 지난 4.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 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이다.
-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4.10일부터 6.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하여 마스크, 방호복,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하였다.

<객실 활용 화물 운송 사례>

- ▶(물품별) 마스크 6.29톤, 방호복 10.26톤, 신선식품(과일류) 11.53톤, 일반의류 4.69톤
- ▶(지역별) 중국 발(發) 3회, 동남아 발(發) 4회, 미주 행(行) 4회, 유럽 행(行) 1회
- ▶(탑재위치별) 천장선반(오버헤드빈) 9회, 좌석위 2회, 천장선반과 좌석 동시 탑재 1회

-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 (Cargo Seat Bag)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.

□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하였다.

-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 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,
 -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하여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*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.

* 운항기술기준 별표 8.1.12.10 객실 내 화물 반입(Carriage of Cargo in Passenger Compartments)에 따른 화물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상자

-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△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(항공기 기종, 화물수량 등을 고려) △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.

- 아울러 항공사들은 위의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·제출하고

-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하였다.

*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 권고사항 미국항공청(FAA) 관련지침 등을 고려하여 위험경감조치 요건 마련

-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(오버헤드빈)에만 실는 것에 비하여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.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B777 기종에 마스크 수송시 객실 천장선반에는 187박스(0.9톤) 수송 가능한 반면 좌석위에는 654박스(3.2톤) 수송 가능

□ 또한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,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(비행 3일 전까지)를 받아야 했으나,

○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(비행 1일전)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*하기로 했다.

* 안전성 검토가 승인된 화물의 경우 비행 전 날까지 비행편명, 탑재화물 종류와 수량, 기내 안전요원 명단 등을 국토부로 '신고'하는 절차로 완화

□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오성운 과장은 “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권시홍 사무관(☎ 044-201-42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> 여객기로 화물수송 안전운항기준 주요 변경 비교

구분	최초 안전기준('20.4.9~)	추가 안전기준('20.6.18~)
화물 종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항공안전법」에 정한 항공위험물 9종 이외의 모든 품목 객실로 운송 가능 	<p>현행과 같음</p> <p>* 다만, 운송물품에 대한 위험경감 조치 등 사전 안전조치의 적정성 판단 필요</p>
포장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염요건 충족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방염요건 충족 또는 위험도 경감방안 마련 후 일반 상자·용기로 수송 (택일)</u>
탑재·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공기 무게중심을 고려한 적정 위치 선정 비행 중 움직임이 최소화 되도록 고정 	<p>현행과 같음</p>
허용중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조상 하중제한치 준수 	<p>현행과 같음</p>
안전인력·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관리자 1명이상 탑승 조종사, 안전관리자 등에게 비상대처요령 등 사전교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객실 순찰 실시(화재감시) 안전인력, 휴대용소화기 등 추가 탑재 조치 <p>* 수송하려는 물품에 대한 화재 등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 등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, 추가로 제출</p>
항공기시스템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객실 내 안전과 관련없는 전력 차단
정부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행예정일 3일 전까지 안전성검토 신청 제출 <p>* 매 건별로 승인 필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동일품목 반복수송 시는 2회차부터 포괄승인</u> <p>* 비행 1일전까지 신고로 절차 간소화</p>